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금지청구제도 도입〉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22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35조의3(금지청구)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등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p> |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국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특허법」, 「상표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02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 도입되어 2021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관한 것<sup>1)</sup>으로, 배타성을 갖지 않는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sup>2)</sup> 따라서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은 금지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 <사인의 금지청구권 관련 국내 제도 주요 현황>

| 법명                       | 근거조문 | 주체            | 행사요건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 영업상의 이익이 있는 자 |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                          | 제10조 | 영업비밀 보유자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 1)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자 2019카합21241 결정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바로 그 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가 소유권과 같이 절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거나 인격권 등과 같이 권리의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영업권으로서 이를 인격권이나 소유권과 같이 배타성을 가진 권리로 보기도 어려워,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법명                         | 근거<br>조문 | 주체                                        | 행사요건                                                  |
|----------------------------|----------|-------------------------------------------|-------------------------------------------------------|
| 「특허법」                      | 제126조    | 특허권자 또는<br>전용실시권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 「상표법」                      | 제107조    | 상표권자 또는<br>전용사용권자                         |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경우 청구 가능                       |
| 「독점규제 및<br>공정거래에 관한<br>법률」 | 제108조    | 불공정거래행위<br>등으로 피해를<br>입거나 입을 우<br>려가 있는 자 |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및 교사·방조 행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가능 |

○ 금지청구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소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 구제로서의 의미를 가짐.<sup>3)4)</sup>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속한 구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이선희,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경쟁저널, p.6~17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중 일부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하도급 분야에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제7조),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제9조), 상품의 반품 금지(제10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제11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제12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4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제14조의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제15조의2),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17조), 보복조치의 금지(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그 인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sup>5)</sup>, 금지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내용 중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약정의무(제2항)<sup>6)</sup>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적극적인인

5) 공정거래법 및 개정안의 금지청구권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작위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금지 또는 예방’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안별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이선희,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경쟁저널 / 孫東煥,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법조)

행위가 필요하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금지 또는 예방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의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대금(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sup>7)</sup>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납품업자등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동의하나, 부작위 의무가 있는 조항으로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6)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7)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